



전 종 수  
본회이사

## 낙농진흥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자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집유체계의 일원화를 기하여  
전체 낙농가가 참여 하는 계획생산과  
전체 유가공 업체가 참여하는 수급체계를 안정화 함으로서  
원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원유검사를 공영화 함으로서 유가공업체의 독단을 방지하여  
낙농가의 안정적수입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WTO(국제무역기구)체제로 전환된 1995년 이후 무수한 난관에 처하고 있다. 다년간 정부의 보호아래 발전하여 농가 소득의 일익을 담당하는 축산업의 모체 역할을하여 왔으나 WTO체제로 전환된 이후 유제품의 수입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2.5%의 급증 추세이고 특히 모조분유의 과다 수입 등으로 인한 낙농가의 폐해가 거듭 되면서 부업 낙농의 존립 기반이 무너져 낙농산업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실정이다.

이러한 난관속에 늦은 감은 있으나 낙농진흥법이 금년 7월 30일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어 1999년 1월 중에 시행토록 되어 있다. 금번 낙농진흥법개정이 지닌 가장 큰 의의와 과제인 집유 일원화와 검사 공영화를 도입 계획 생산을 도모 함으로서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체간의 교섭이 가능해짐으로서 앞으로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낙농진흥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제 일만구천호의 낙농가는 앞으로 낙농진흥회의 활동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야 하겠다.

우선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낙농진흥회의 업무 범위를 보면,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 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업무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낙농진흥회는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의 향후 발전인가? 퇴보인가? 하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집유체계의 일원화를 기하여 전체 낙농가가 참여

하는 계획생산과 전체 유가공 업체가 참여하는 수급체계를 안정화 함으로서 원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원유검사를 공영화 함으로서 유가공업체의 독단을 방지하여 낙농가의 안정적수입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이제 낙농진흥회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바라는 점을 적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에서 소비되는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향후 매년 소비 예상량을 추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추정된 소비량을 기초로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농가의 원유생산 할당량(쿼터량)의 결정은 농가의 생산능력 및 수급계획을 적절히 감안하여 결정하고 생산계약을 함으로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하는 세부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유업체에 원유를 공급 함에 있어 가격결정이 시장원리가 적절히 작용할수 있도록하여 낙농가 소득

# 특집

증대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셋째, 쿼터량을 초과하여 원유가 과잉생산된 경우의 분유생산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원유가격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우유 및 유제품의 우수성을 적극홍보하여 국내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대를 꾀하고 해외시장의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낙농산업의 안

정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섯째, 집유조합의 지정 및 집유 권역의 설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유가공업체간 원유의 공정한 공급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다각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일만구천호 낙농가의 낙농진흥회의 발족과 함께 바라는 바가 크므로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승화시켜 낙농산업의 안정적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낙농진흥회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이다. ㉞



이종영  
본회감사

## 반대의 목소리도 반영 단합의 계기로 삼자

진흥회설립과 운영상에 모든 문제는 난제에 난제이지만  
우리 낙농인이 꼭 넘어야할 과제임은 틀림없지 않은가.  
늦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법개정에 반대입장에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게 하고 법개정을 반대하던 일부지역 낙농가도  
두함께 참여해서 이나라 낙농사에 큰 전환점이 되도록  
모두 참고 인내하며 진흥회 설립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자.

어제는 몇 농가가 오늘은 또 몇 농가가 목장문을 닫고 폐업을 하면서 서둘러 낙농업을 떠난는지..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흔히볼수 있는 쓰러져만 가는 낙농업에 현상이다.

이대로라면 이땅에 몇 농가의 낙농가가 존재하려는지 의문이 되는 때에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었다.

10여년을 끌어온 낙농진흥법이 184회 국회에서 제정된지 30년만에 개정을 한 것이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반대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선 눈앞에 작은 이익이라

고 볼 수가 있다. 이제는 우리는 앞을 내다보며 우리 낙농산업에 항구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개정된 법 안에서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 할수 있도록 노력 해야만할 것이다.

법개정이 늦어져서 아쉬움이 있지만 장고에 시간을 두고 법개정에 관해서 열띤 찬반토론을 했고 토론장에서는 고성이고 오고가지 않았는가. 이 모두가 이나라 낙농산업에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에 큰목소리였다.

이제 낙농진흥법의 효율적인 시행으로 우리 낙농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개정후의 낙농진흥회 설립 및 운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먼저 낙농진흥회 위원회는 생산자단체, 유업체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에서 고루 위촉되어서 위촉된 위원회에서 집유방법, 원유검사 공영화방법, 원유분배방법, 우유에 대한 홍보방법 등에 관해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해서 최종결정사항을 전국을 순회하며 개정된 법률내용, 시행방안에 관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낙농가에 의견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